
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 
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
(김우남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04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2. 12. 7.

발 의 자 : 김우남 · 이운석 · 김세연  
강기정 · 백재현 · 김성곤  
김동철 · 안민석 · 이낙연  
유성엽 · 김영록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생활안정지원금 등 생활안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,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. 이에 따라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보호시설은 국가로부터 그 설치·운영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.

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,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

마련하고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설 개선·신축 비용 및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2 신설).

##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(이하 “보호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개선·신축 비용 및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보호시설의 설치·운영의 기준 및 인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로 본다. 다만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 행	개      정      안
<p><u>&lt;신    설&gt;</u></p>	<p><u>제5조의2(일본군위안부    피해자 보호시설) ①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일본군위안부    피해자 보호시설(이하 “보호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  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 호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개선·신축 비용 및 운영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보호시설의 설치·운영의 기 준 및 인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 다.</u></p>

「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

- 개정안 제5조의2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,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설 개선·신축 비용 및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재정소요가 예측됨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의안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 단서 중 제3호 ‘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’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- 개정안 제5조의2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,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

규정을 마련하고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설 개선·신축 비용 및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, 현재의 시점에서 설치·운영되는 보호시설의 규모,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설 개선·신축 비용 및 운영비용의 지원 범위와 수준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워 그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기 곤란함.

#### 4. 작성자

□ 김우남 의원실 김병찬 보좌관(02-788-2754)